

2025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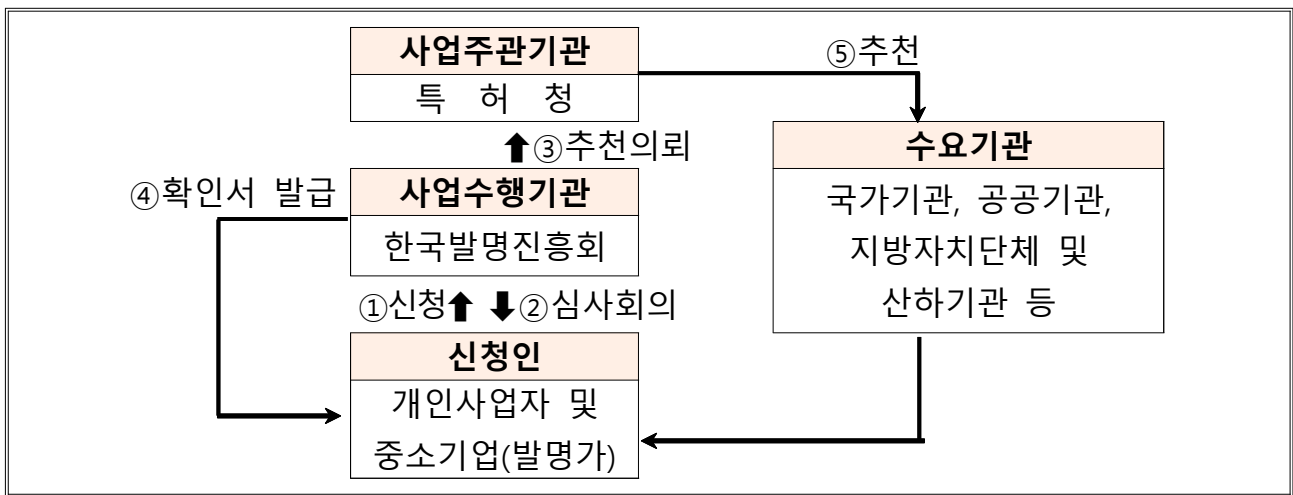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9일
한국발명진흥회장

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개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 관련근거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8장 “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 등

○ 사업 체계도



○ 추진 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 안내	신청·접수	접수 대상 심사회의	수요기관 대상 추천	납품실적 조사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서면·발표평가	추천 확인서 발급 및 특허청장 명의 추천 공문 발송	매년 3개년 추천 건에 대한 실적 조사
'25.9.9.	~'25.10.15.	~'25.11월	~'25.12월	매년 연말

2 신청 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지식재산권의 권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등록원부 기준)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 제출(붙임6)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모두 등록한 제품

《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방법 》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의 3번째 메뉴인 "목록화요청" 클릭 → 품목(식별번호) 등록 → 동의함
 - 품목등록 요청하기 → 검색어 입력 → 확인 → 추천품목 클릭 → 신청서 작성 → 요청

※문의처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1588-0800, 시스템 문의:070-4056-6399)

- 1차수 1사 1제품만 신청·선정
 - * '1제품'이라 함은 물품분류번호 기준 동일 번호에 속한 제품으로 정의한다.(단, 신규지정 신청 후 탈락한 제품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하며, 이때 '제품'의 기준은 물품식별번호로 판단)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 불가
 -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이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총 6년 동안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3 신청 안내

- 사업 공고 : 2025. 9. 9.(화)
- 신청 접수기간 : 2025. 9. 25.(목) 10:00 ~ 10. 15.(수) 16:00
 - * 접수 증가 등으로 신청 페이지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신규)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이화 전문위원(02-3459-2931, pp@kipa.org)
 -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4 제출 서류

○ 작성 서류

연번	제출 항목	서식	파일형태	비고
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	붙임1	PDF	필수
2	신청제품 설명서(신규지정)	붙임2	PDF	필수
3	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	붙임3	PDF, Excel	필수
4	신청확인서(신규지정)	붙임4	PDF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실무자 모두 제출	붙임5	PDF	필수
6	공동권리자 동의서	붙임6	PDF	해당 시
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	붙임7	Excel	필수

○ 증빙 서류


















연번	제출 항목	세부내용	비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90일 이내 발급분	필수
2	중소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	필수
3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내)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	필수
4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내)	*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 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필수
5	제품 카탈로그	* 신청제품과 관련된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 제품사진이 포함된 홍보(설명)자료 첨부	필수
6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신청제품의 물품분류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협업생산)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필수
7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필수
8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부가세신고서(개인사업자)	해당 시
9	가점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 가점 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해당 시

○ 서류제출 요령

□ 세부 파일 저장 방법

- 작성·증빙 서류의 세부 파일명은 평가위원이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항목의 번호, 명칭과 동일하게 설정(예시 이미지 참고)
- 각 서류의 파일형태는 공고에서 요구하는 형태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제출

<서류제출 파일명 설정 예시>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붙임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붙임2) 신청제품 설명서(신규지정)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붙임3) 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_기업명	2025-03-12 오전 10:17	한PDF 문서
 (붙임3) 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_기업명	2024-09-24 오후 3:25	Microsoft Excel ...
 (붙임4) 신청확인서(신규지정)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붙임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붙임6) 공동권리자 동의서_기업명	2025-03-12 오전 10:18	한PDF 문서
 (붙임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_기업명	2025-03-12 오전 10:19	Microsoft Excel ...
 (증빙1) 사업자등록증명원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2) 중소기업 확인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3) 특허등록원부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4) 등록특허공보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5) 제품 카탈로그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6) 직접생산확인증명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7)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_기업명	2025-02-10 오후 3:37	ALZip ZIP File
 (증빙8)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_기업명	2024-10-29 오후 2:44	한PDF 문서
 (증빙9) 가점 증빙서류_기업명	2025-02-10 오후 3:37	ALZip ZIP File

5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 효과성)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추천의 적합성)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 *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보증 판단 서류 : 신청제품의 모든 모델명 및 용도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필수)
 - * 선정 제품의 규격목록이 10개 이상일 경우, 용도 등 기준을 정하여 규격목록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각 분류별로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능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평가 항목 점수 인정

○ 가점 항목(최대 5점)

- 다음 각 항목에 따라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 * 가점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가점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하며, 가점은 항목 구분 없이 합산하여 최대 5점 이내로 인정
- * '①수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2022년 이후) 수상 건에 한함(단, 여성발명왕 EXPO, 생활발명코리아의 경우 2024년 이후 수상 건부터 인정함)

구분		세부내용
① 수상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1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1점), 특허기술상(2점) 수상, 여성발명왕EXPO 세미그랑프리 이상(1점), 생활발명코리아 국무총리상 이상(1점)
② 정부지원(1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되어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시계약(전용실시)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지원한 경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공공연구기관
③ 신청인 자격(1점)		창업기업*(창업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 기업 인증, 국가 유공자가 대표인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인 자격이 창업기업인 경우, 증빙서류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제출 (https://cert.k-startup.go.kr)
④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3점)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GS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기타(1점)	녹색기술,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 우수 재활용 제품(GR),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GMP 인증, K마크, KS마크, KC마크, Q마크, 건 마크, IP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기술인증(사업화연계 평가용도) 수혜기업,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기업

○ 서류평가 면제

- 특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舊 IP-C&D 전략지원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 제품으로 본 사업에 지원한 경우 서면 평가 면제 혜택 부여(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3개년(2022~2024) 이내의 수혜기업
- 최종평가(우수, 적정, 보완) 결과 '적정' 이상 기업

6 신청 시 유의사항

-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의 경우 최대 20개 희망 수요기관에 구매 추천 공문 발송이 가능하나, 전자공문 발송 불가능한 기관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작성한 수요기관 대상과 상이할 수 있음
 - * 우수발명품 선정 후 수요기관 대상(최대 20개 기관)으로 구매 추천 공문 발송
-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가 적용된 제품 신청 시에는 [붙임2]신청제품 설명서에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과 해당 제조 공정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생산 설비를 직접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협업생산인 경우), 협업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
- 우선구매추천 신청제품 신청서, 제품설명서에 들어간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제품의 사진 및 정보가 포함된 제품 카탈로그(홍보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 해당 자료는 평가 및 수요기관 추천 공문 발송 시 활용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평가 제외
- 본 사업의 평가에서 2회 이상 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 디자인)의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
- 본 사업 신청 시, 신청기업이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신청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진행되는 특허청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작성·증빙서류의 허위 등 내용의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기업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실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우선구매 추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8 선정 시 혜택

-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 우선구매추천 유효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간
 - * 단, 권리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신규지정·기간연장 선정 시: 최대 20개 수요기관 추천
 - 유효기간 내 추가 추천(1회 限, 희망 시) 가능: 최대 10개 수요기관 추천
 - * 단, 추가 추천의 경우 최초 선정된 연도에 추천은 불가하며, 다음 해부터 추천 가능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 관련 근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특허청고시 제2024-16호)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 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또는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에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 혁신 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 관련 규정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 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9 기타 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신청한 제품과 특허와의 연관성이 적거나, 추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 해당 권리 또는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신청 시 신청 업체가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선정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임의로 발송할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해당권리의 이전·소멸·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 ( , ) 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및 처리

-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심사결과 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음

○ 납품실적 조사

- 선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대상 납품실적 조사를 시행함
-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품의 납품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납품실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붙임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신청서(신규지정)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본사 주소												
	기업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제조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접제조 <input type="checkbox"/> 협업제조											
	신청제품 연간 생산능력	개	상시종업원 수	명											
	총자산 (전년도 결산 기준)	백만원	매출액 (전년도 결산 기준)	백만원											
대표자	성명		내선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실무책임자 (신청자)	성명		내선전화												
	부서		휴대전화												
	직책		이메일												
신청제품	대표권리번호 (등록번호)	제00-0000000호	발명의 명칭												
	제품명		제품의 용도												
	제품의 특성 (효과 및 성능)	*신청 제품에 대한 특성을 3줄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모델명</th> <th style="width: 20%;">물품분류번호 (8자리)</th> <th style="width: 20%;">물품식별번호 (8자리)</th> <th style="width: 20%;">품명(물품분류명)</th> <th style="width: 20%;">품목명(식별명)</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품명(물품분류명)	품목명(식별명)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품명(물품분류명)	품목명(식별명)										
* 신청 모델(물품식별번호)이 다수일 경우 별지 서식(규격목록) 및 Excel 파일을 별도 작성하여 첨부 (상기 표에는 대표 1건만 작성) * 제품 관련 인증서 및 신청 모델(물품식별번호)별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미제출 시 평가 불가)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본인의 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대표자(신청인)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신청제품 설명서

1. 신청제품 개요

업체명		제품명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품목명(식별명)			
<p>* 모델명 및 물품식별번호가 다수일 경우 [붙임5] 및 관련 서류(엑셀 양식)를 작성하여 첨부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 관련 점수 반영불가)</p>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p>* 제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히 소개</p> <p>* 도면, 설계도, 제품사진 등 활용하여 제품의 구조 및 작동 원리 설명</p> <p>* [요약] 각 제품규격 및 (모델) / 물품분류 / 식별번호 등에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기술 적용 내용 요약 정리 작성</p>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p>* 기존기술 및 제품 대비</p> <p>①기술의 고도성, ②제품의 차별성·혁신성, ③제품의 품질 우수성 설명 - 보유 지식재산권 적용 기술에 대한 타 제품 비교 또는 관련 기술 우수성 세부내용 설명 (제품 및 규격 모델명에 따라 각각 작성)</p> <p>* 객관적인 지표들을 기준으로 설명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등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 (인증서 인용 시 반드시 증빙 첨부)</p>			

제품의 구매효과성

- * 경쟁제품 대비 신청제품의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설명
- 주요 경쟁제품과의 비교


구분	주요경쟁사(경쟁사명)	신청기업
제품명		
제품사진		
판매금액		
시장점유율 (%)		
제품비교	* 제품 규격 모델별 각각작성	* 제품 규격 모델별 각각작성

- * 제품의 시장성 (제품시장의 규모, 성장가능성) 설명
- * 공공조달 및 구매추천의 적합성 및 효과성 서술
- * 객관적인 지표들을 기준으로 설명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 능력

- * 품질관리 정도, 품질관련 인증 유무 및 품질보증 능력 서술
- 제품의 안전성, 내구성 및 수명 등 서술
- * 연간생산능력 서술
- * 객관적인 지표들을 기준으로 설명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또는 물품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 (인용 시 반드시 증빙 첨부)

2. 특허(실용신안) 권리 개요 및 제품 적용내용

적용 제품규격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혁신 제품에 적용된 발명·실용신안 정보						
No	등록번호	권리자	발명의 명칭	등록일 (존속기간 만료예정일)		
1						
...						
00						
*제품규격서 정보와 동일해야 함						
<신청 제품과 특허(실용신안) 대비> * 작성방법 - 신청 제품의 구성요소를 항목별로 작성하고, 각 구성요소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를 기술적 대응 관계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는 독립청구항 기준으로 작성. 독립청구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술된 청구항 의미(예: 청구항 1 등) *도면, 제품 사진 및 적용된 특허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작성 양식은 신청자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사진: 신청제품 구성요소> 			* 신청 제품의 구성요소 전부를 나열하고, 기존 제품 대비 혁신성이 있는 구성요소(핵심기술)의 경우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기재)를 함께 기재 * 제품 실물이 확인 가능한 사진 또는 도면을 활용해 구성요소에 적용된 특허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 사진이나 도면으로 특허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성적서, 인증서, 측정결과 등 객관적 기술 자료 별첨			
구성요소	기술 구분	적용 특허(실용신안)-독립항 기재			특허적용 대비결과 신청제품 적용 여부	
		No 1	...	No 00		
1	보호렌즈	핵심	청구항 1	청구항 5	핵심 기술이 특허 청구항과 연결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구성요소별로 청구항의 용어와 1:1로 대응.	
2	보안경본체	핵심	청구항 1		청구항 3	No 1: 청구항 1의 보안경 본체(10), 보호렌즈(20).. No 00: 청구항 3의 000에 해당
3	우측환기챔버	핵심		청구항 1		
4	코필터	핵심		청구항 3		
5	다리	종래				종래기술의 경우 대응 특허 불요
6	좌측환기챔버	종래				

3. 신청업체 일반 현황

업체명				소재지 (본사)	
종업원수	명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	
개발인력	명		설계인력	명	
사업자 등록번호			공 장 정 보	(등록번호) (소재지)	
총 매출 (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총 수출 (백만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매출(억원)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신청제품 수출(백만 \$)	(직전년도) (금년실적, 계획)	
주거래처			신청제품 주수요처		
신청 제품의 타 기관 인증 현황					

주요 판매실적

판매처	판매수량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매처 담당자
				부서 : 성명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Main특허 외 관련특허)

구 분	등록번호	등록일	명 칭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선정 시 활용계획

- * 본 지원사업 선정 시 활용계획 간략히 설명
- * 신청제품의 예상 수요처(공공기관) 및 예상 수요 기재
- * 향후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간략히 기재

[붙임3] 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 ***엑셀 양식과 함께 제출**

기본 정보						
기업명		신청제품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 규격 정보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치수(mm)	기준(용도 등)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기업명 : 대표자 : (인)						
* 신청제품 규격목록에 적혀 있는 모든 제품의 시험성적서 첨부 필수 * 신청제품의 규격목록이 10개 이상일 경우 용도 등 기준을 정하여 규격목록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각 분류별로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능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평가 항목 점수 인정 * SW 등 규격명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명(모델명) 기입, 치수 등은 공란 처리 무방						

신 청 확 인 서

- 권리 번호 :
- 발명(고안, 디자인)의 명칭 :
- 발명품(제품)의 명칭 :
- (대표) 모델명 :
- (대표) 물품분류번호 :
- (대표) 물품식별번호 :

본 신청제품은 상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등록·보유 유지 중인 제품임을 확인하며,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본인의 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을 신청합니다.

추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관리운영지침 7조」에 따라, 추천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또는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공동권리자 동의서

신청기업	
대표자	
본사 주소	

위 기업(사람)에게 본인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일체의 권리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 권리 번호 :
- 권리 명칭 :
- 동의 내용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및 선정 여부, 이에 따른 혜택 등 일체의 행위

20 . . .

- 신청자(기업명) :
- 소속/직위 :
- 성명 : (인)
- 동의자(기업명) :
- 소속/직위 :
- 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각 1부. 끝.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